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389번
----------	-------

2021년 6월 22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제출일자 : 2021년 5월 25일
- 다. 회부일자 : 2021년 5월 31일
- 라. 상정결과 : 제30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1년 6월 22일,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문화본부장 유연식)

- 가. 서울시에서는 시민의 자율적인 문화 예술 활동을 진작시켜 서울의 문화 예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 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 예술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 나. 2021회계연도 1차 추경예산 편성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1) 사무명 : 서울문화재단 출연금

2)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 사무내용

-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활동의 지원
- 문화예술의 교육 및 연구
-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 시민의 문화향수 및 창의력 증진
- 지역문화의·육성 지원 및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나. 추정개요

1) 추경예산 : 3,000,000천원

※ 총 출연금액 58,762,649천원 (기정 출연금액 55,762,649천원)

2) 출연금 편성 내용

- 예술창작지원 사업비 : 3,000,000천원

3) 추경필요성

- '21년 예술창작지원 사업비는 총109.5억원이며 공모를 통해 562건의 예술단체(인)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였음.

하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4,346여건의 탈락자가 발생함.

- 선정비율(12.9%) : 신청건수 4,908건, 선정건수 562건
- 코로나19로 인해 민간주도의 공연 및 창작활동은 크게 위축되어 예술계 창작활동 지속을 위해 공공의 지원확대가 필요함
- 공연건수(55% 감소) 및 공연 매출액(91% 감소)[공연예술통합전산망]
- ※ ('19.12월) 1,561건, 547억 ⇨ ('20.12월) 703건, 51억

다. 서울문화재단 기관 개요

- 1) 소재지 : 서울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 2) 규모 : 대지 1,520.2㎡, 건물 2,367.41㎡ (지하1층, 지상5층)
- 3) 전경 및 위치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21년도 1차 추경예산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경욱)

가. 동의안 개요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하여 2021년 1차 추경예산 편성에 앞서 서울문화재단의 <예술창작 활성화 사업>¹⁾에 관한 추가 출연 여부에 대하여 미리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되었음.

나. 출연의 필요성

- 서울문화재단은 급변하는 환경에도 단절되지 않는 지속가능한 예술창작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예술창작활동 지원사업’(예술인 및 예술단체의 역량과 창작의욕을 제고하고, 안정적 창작기반 제공)과 ‘예술기반 지원사업’(안정적인 창작환경 조성 제공)을 진행하고 있음.

1) 예술창작 활성화 사업은 예술활동 지원사업과 예술기반 지원사업으로 구성됨.

〈예술창작 활성화 사업〉

구 분		세부구분	세부내용
예술활동 지 원	창작준비 지 원	창작준비지원	작업계획 구상 전 준비단계에서 진행되는 모든 예술 관련 활동 대상 지원(리서치, 인터뷰, 역량강화 등)
	공 간	창작 작업실·연습실 지원	창작활동(준비, 연습, 발표 등)을 위하여 예술인이 임대 중인 공간에 대한 임차료 지원
예술기반 지 원		예술공간지원	예술인들의 활동이 가능한 예술공간 대상 공간운영 및 사업비 등 지원
	연 구	예술연구서적 발간지원	예술 관련 연구 서적 발간 지원
		예술현장연구모임지원	예술생태계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예술활동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연구 지원(결과물 공유 필수)
	기 록	우수예술작품기록지원	동시대 공연예술 분야 우수 작품의 아카이빙을 위하여 중견작가 대상 작품집 발간 지원
시각예술중견작가 작품집발간지원		동시대 시각예술 분야 우수 작품의 아카이빙을 위하여 중견작가 대상 작품집 발간 지원	

- 2019년에는 예술인공모사업 지연으로 인한 예술인들의 불만이 증폭되어 예술현장에 적합한 공모사업으로 개선하기 위한 간담회를 추진하였음.

그 결과로 2020년부터 개선된 〈예술창작 활성화사업〉을 운영해오고 있는데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전통적인 방식의 작품 발표 뿐만 아니라 야외 공간이나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예술활동 지원 등 다양화된 방식의 예술활동을 지원하는 것과, 사업계획이 미확정이라도 창작활동비를 우선적으로 지급하여 안정적 예술창작을 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 등임.

〈예술창작활동 지원사업 개선사항〉

구 분		20년 개선사항	21년 개선경과
지원 설계 및 운영	사업기간	일부사업 다년시행	2019년 선정사업 2년차에 따른 다년사업 효과성 모니터링
	지원대상	기획자 및 실연자 등 포괄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공모신청서 등 개선
	지원/선정자격	나이 및 선정 횟수 제한 폐지	유지
지원내용		- 창작과정에 대한 인정 (창작활동비 지급) - 평균 지원금 상향	유지
선정	심의 공정성 강화	사업목적별 심의기준 명확화	장르별 세부 개선을 통한 심의 기준 보완
	심의 투명성 강화	개별 심의평 작성	심의 제척사항 강화 등을 통한 투명성 강화
지원금		본인 사례비 및 사업추진비 등 지원금 인정항목 확대	유지

- 서울문화재단의 〈예술창작 활성화사업〉은 지속가능한 예술생태계 유지를 위해 안정적인 창작 환경의 토대가 되는 사업임.

특히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결과발표가 어려운 상황에서 본 사업과 같은 예술가의 창작과정 중심의 지원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다. 출연규모의 적정성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문화예술계의 피해 규모는 1조 5,717억 원으로 추정되며 지난 1년간 반복된 공연, 전시 등의 취소는 예술인들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음.

서울시 예술인 총 7만여 명 중 약 76%인 5만3천여 명이 프리랜서로 활동 중이며, 지난해 1~10월 이들의 고용피해 규모는

1,384억 원으로 추정됨.

- 2021년 <예술창작 활성화사업> 사업비는 총 109억 5천만원 (기정예산)으로, 2개 분야에 1,000여건의 예술단체(인)가 선정되었으나 한정된 재원으로 6,500여건의 탈락자가 발생하였음.

<예술창작활동 지원사업>

장 르	신청건수	선정건수	선정비율
연 극	758	68	9%
무 용	282	48	17%
음 악	915	112	12%
전 통	396	63	16%
다 원	336	43	13%
시 각	1,556	147	9%
문 학	665	50	8%
합 계	4,908	531	11%

〈예술기반 지원사업〉

사 업 명	신청건수	선정건수(예상)	선정비율
RE:SEARCH	1,706	300	17.5%
창작예술공간_작업실연습실	468	113	24%
창작예술공간_예술공간	102	25	24.5%
시각작가작품집	93	5	5%
우수예술작품기록	39	7	17.9%
예술전문서적발간	60	9	15%
예술인연구모임지원	132	15	11.3%
합 계	2,600	474	18.2%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문화예술계 어려움 지속됨에 따라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을 통한 문화예술생태계 위기상황 극복을 위하여 서울문화재단은 〈코로나19 예술활동 지원사업〉을 추가 편성하였는데 관련 사업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온라인플랫폼 기반 예술창작활동 지원사업’(17억)은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예술인(단체)의 예술창작을 위한 제작비와 창작 사례비를 지원하고, 제작된 창작물을 서울시와 문화재단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 유통하여 시민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임.

‘예술인 예술창작 활동 지원’(10억)은 코로나19로 인해 창작 발표가 어려운 시기에 준비 및 구상 단계의 예술창작준비과정 활동비를 지원(리서치, 실험 및 연구 등)하는 사업임.

‘거리예술 활동 지원사업’(3억)은 거리예술 및 서커스 장르의 작품 창작 및 연구 지원과 거리예술 시즌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공공장소에서 거리예술을 선보이는 예술작품을 지원하는 사업임.

- 특히 거리예술·서커스 분야는 작년 코로나19 확산 이후 다수의 축제와 행사가 취소되어 예술가의 작품 창작 및 발표의 기회가 현저히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관습적인 예술 공간을 벗어나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거리예술을 선보이는 예술가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작품 창작 지원 및 공연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코로나19 예술활동지원 추진계획〉

내 용	금 액 (백만원)	비고
총 계 (문화재단 출연금)	3,000	
온라인미디어 예술콘텐츠 개발 및 보급	1,700	
예술인(단체) 50팀×32백만원 : 지원금 / 100백만원: 심의비, 홍보비 등		
예술인 예술창작 활동 지원	1,000	
예술인 300명×3백만원 : 지원금/ 100백만원: 심의비, 홍보비 등		
거리예술 활동 지원	300	
예술단체 10팀×14백만원 : 지원금/ 12개 작품×9백만원: 공연료		
52백만원: 심의비, 홍보비 등		

라. 종합의견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한정된 예산으로 <예술창작 활성화사업>과 관련하여 다수의 미선정자가 발생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 확보된 예산인 만큼, 현장 예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설계가 수반되어야 할 것임.

이를 위하여 올해 개관하는(2021년 10월 예정) ‘예술청(예술가 중심의 예술공유 플랫폼)’에서 예술현장 적합성을 강화해 나가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이와 더불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추경을 통해 예술인 지원사업을 편성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적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문화예술 지원사업 체계를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담당 조사관	연락처
노재윤	02-2180-8118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2389
----------	------

제출년월일 : 2021년 5월 25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가. 서울시에서는 시민의 자율적인 문화 예술 활동을 진작시켜 서울의 문화 예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 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 예술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나. 2021회계연도 1차 추경예산 편성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1) 사무명 : 서울문화재단 출연금

2)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 사무내용

-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활동의 지원
- 문화예술의 교육 및 연구

-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 시민의 문화향수 및 창의력 증진
- 지역문화의·육성 지원 및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나. 추경개요

1) 추경예산 : 3,000,000천원

※ 총 출연금액 58,762,649천원 (기정 출연금액 55,762,649천원)

2) 출연금 편성 내용

- 예술창작지원 사업비 : 3,000,000천원

3) 추경필요성

- '21년 예술창작지원 사업비는 총109.5억원이며 공모를 통해 562건의 예술단체(인)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였음.
하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4,346여건의 탈락자가 발생함.
· 선정비율(12.9%) : 신청건수 4,908건, 선정건수 562건
- 코로나19로 인해 민간주도의 공연 및 창작활동은 크게 위축되어 예술계 창작활동 지속을 위해 공공의 지원확대가 필요함
· 공연건수(55% 감소) 및 공연 매출액(91% 감소)[공연예술통합전산망]
※ ('19.12월) 1,561건, 547억 ⇨ ('20.12월) 703건, 51억

다. 서울문화재단 기관 개요

1) 소재지 : 서울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2) 규모 : 대지 1,520.2 m^2 , 건물 2,367.41 m^2 (지하1층, 지상5층)

3) 전경 및 위치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21년도 1차 추경예산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문화예술과 예술정책팀 박백웅 (☎ 2133-2557)